

## ‘잊혀질 권리’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 –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환영한 독일 사회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어감이 주는 스산함과 반대로, 잊혀지는 것은 인류 역사상 사회 작동의 기본원리로 기능해왔다. 그리스 신화 속 망각의 강 레테에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표현인 ‘망년회(忘年會)’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잊고, 잊혀지며 살아간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피해를 입거나,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werden)’에 대한 판결은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독일 사회의 반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곤잘레스(González) 판결

1998년 카탈루냐(Cataluña) 지역지 라반구아디아(La Vanguardia)는 부채로 곤란을 겪고 있던 변호사 곤잘레스(González)의 자택 강제경매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12년이 지난 2009년, 곤잘레스는 부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가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택 경매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곤잘레스는 신문사 아카이브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라반구아디아는 이를 거절하였다. 곤잘레스는 구글(google) 스페인에도 검색목록에서 자신의 경매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구글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곤잘레스는 스페인정보보호기구 AEPD(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그는 명예훼손성 기사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어 자신의 명예회복을 어렵게 혹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택의 강제경매에 대한 공적 관심은 보도 직후를 제외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AEPD는 신문사 라반구아디아에 대한 청원은 기각하였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에 대한 링크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스페인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몇 가지 질의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우선 미국 회사인 구글에 EU의 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구글이 검색된 결과에 나타나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검색 목록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의 문제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노출된 개인의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체로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EU 정보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하였다. EU 정보보호법이 구글의 업무와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에서 특정 개인의 이름 혹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 오랫동안 존재하여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검색서비스 업체에 검색결과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EU기본법상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한다는 재판부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현재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개인 정보에 대한 검색 배제 요구를 인정한 것으로서, 단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개인

의 정보를 편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즉, 검색결과와 관련된 개인 정보 삭제 등의 요청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 곤잘레스 판결 이후 독일 사회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 직후, 독일 사회의 반응은 재판부 결정을 지지하는 쪽이 압도적이었다. ‘정보자유 및 보호를 위한 유럽아카데미(EAID)’ 의장이자 전 연방정보보호기구의 수장인 페터 샤아르(Peter Schaar)는 곤잘레스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라고 평가하였고, 헤이코 마아스(Heiko Maas) 연방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결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보호와 소비자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울리히 켈버(Ulrich Kelber) 연방하원의원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글에 정보보호의 책임을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연방하원에서 미디어 창조경제 그리고 디지털인프라 위원으로 있는 타베아 뢰스너(Tabea Rösner)도 곤잘레스 판결을 옹호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독일 내 주무기관인 정보보호 및 인터넷자유를 위한 연방협약(Die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이하 ‘BfDI’) 역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BfDI의 수장인 안드레아 보스호프(Andrea Voßhoff)는 2014년 12월 주간지 포커스(FOCUS)와의 인터뷰에서 곤잘레스 판결이 기본적 시민권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해당 판결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편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EU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만약 유통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독일 시민의 기본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도출된 것이므로 잊혀



독일 정보보호 및 인터넷자유를 위한 연방협약(BfDI)로고(왼쪽) 및 BfDI의 수장인 안드레아 보스호프(오른쪽)

질 권리가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특별한 기본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대중의 공적관심사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판결로 인해 삭제요청이 일반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표현 자유의 충돌 문제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두 기본권 중 인격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안드레아 보스호프는 두 권리 중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라면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반대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삭제 요청이 아니라면 검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소수의견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독일 미디어 법학자 토마스 슈타들러(Thomas Stadler)는 게시글 링크의 삭제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불균형적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가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판결 직후 독일에서 제기된 거의 유일한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요하네스 마싱(Johannes Masing) 재판관이 곤잘레스 판결은 '커뮤니케이션 기본법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토마스 슈타들러와 유사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곤잘레스 판결이 독일 법원에 미친 영향

곤잘레스 판결은 독일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7월 7일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2012년 정치인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편지를 익명으로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관련 기사는 여전히 온라인 아카이브에 존재하였고 유사한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원고의 정보가 연관되어 노출되었다. 이에 원고는 독일 유력지 쾰른도이체짜이퉁(Süddeutsche Zeitung)과 해당 기사를 게재한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신문사와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자가 해당 보도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름을 google.de에 입력하면 쥐드도이체짜이퉁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기사가 지속적으로 검색 결과 상위 3개 이내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보도가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012년 3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기사를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도 당시 해당 기사는 상당한 수준의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원고를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 단순 용의자 수준에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부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록 원고에게 피고의 아카이브에서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지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원고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고등법원은 이것이 보편적 인격권법에 의거한 독일시민법(BGB) 1004조 ‘제거 및 부작위요구’ 제1항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정보의 노출과 확산이 당사자의 명성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보도 당시의 기사 내용에 대한 공적 관심만큼이나 인격권 침해의 부작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의 작성자들을 상대로도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곤잘레스 판결에 대한 독일 언론의 반응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 직후 주요 독일 언론들도 해당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쥐드도이체짜이퉁의 헤리베르트 프란틀(Heribert Prantl) 기사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날을 “위대한 날”로, 같은 신문의 베른드 그라프(Bernd Graff) 기사가 해당 판결을 “이정표적”이라고 칭했다.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넨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n Zeitung)의 마티아스 뮐러(Mathias Müller) 기사는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같은 신문의 벨트(Welt)지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해당 판결로 인해 평생 지속될 개인 정보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

Sorge um Informationsfreiheit

## Führt das Google-Urteil zu Zensur?

Über das „Recht auf Vergessen-Werden“ im Internet freuen sich nicht mal die, die sonst gern gegen Google wettern: Peter Schaar, bis vor kurzem oberster Datenschützer, fragte heute: Sind unangenehme Tatsachen im Netz künftig nicht mehr auffindbar?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넨짜이퉁의 요아킴 안 기자가 작성한 '구글 판결이 검열로 이어질까' 온라인 기사화면 캡처

냈다. 방송의 경우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독일 양대 공영 방송인 ARD와 ZDF는 해당 판결로 인해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곤잘레스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후속 조치에 대한 반론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넨짜이퉁의 요아킴 안(Joachim Jahn) 기자의 보도이다. 그는 “구글 판결이 검열로 이어질까?(Führt das Google-Urteil zu Zensur?)” 기사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보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유럽사법재판소 닐로 자스키넨(Nillo Jääskinen) 판사가 판결문에서 해당 결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신문사 아카이브는 불편한 것들을 잊어 야만 하는가(Nun müssen auch Zeitungsarchive Unliebsames “vergessen”)” 기사를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링크를 삭제하라는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결정은 결국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법적 결정이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의 아카이브 운영을 위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신문의 코리나 부드라스(Corinna Budras) 기자 역시 “언론자유에 대한 선전포고(Kampfansage an die Pressefreiheit)” 기사를 통해 누구나 자신에게 부적합한 것들을 지울 수 있다면, 진실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디짜이트(Die Zeit)는 소셜 미디어상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디짜이트는 구글 투명성보고서를 인용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상당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바두(Badoo)와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무단으로 일반인들의 사진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구글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SNS에 대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독일 언론은 정보보호 강화라는 측면과 프라이버시권을 우선하는 판결의 전제에 대해 영미권 국가와 달리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링크 삭제의 대상과 범위에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보호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언론 자유의 침해에 대한 문제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독일 네티즌의 반응

곤잘레스 판결 직후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이체포스트(Deutsche Post)그룹 산하 ‘인터넷 내 신뢰와 안전을 위한 독일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Vertrauen und Sicherheit im Internet, 이하 DIVSI)’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온라인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독일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은 잊혀질 권리 판결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영구적으로 검색되거나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환영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목록에서 링크를 삭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정보출처를 삭제해야 잊혀질 권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기보다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소비자센터(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의 정보보호전문가 미카엘라 슈뢰더(Michaela Schröder)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센터에



DIVSI의 잊혀질 권리 관련 온라인심층인터뷰 보고서

서는 더 많은 해명과 설명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와는 별개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반응들을 불러왔다. 해당 판결 다음 날 EU 역내 1,000명 이상이 링크 삭제를 요청하였고,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밀려드는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삭제요청 양식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구글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해당 양식을 통해 총 271,785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41%가 받아들여져 검색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독일에서는 약 46,000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삭제요청 성공률은 EU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구글이 아닌 EU정보보호협약기구에 제기된 불만도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글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이에 대한 반응

구글은 삭제요청 양식을 공개하고 링크를 삭제하는 등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2014년 7월 미디어, 학계, 정보보호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삭제 관련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독일 인사로는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전 연방법무부장관이 있다. 자문위원회는 구글로부터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고려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위임받았으며, 2015년 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EU기본권헌장, EU인권협약과 같이 유럽협의체가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자기결정권을, 다른 한편으로 삭제요청 시 검색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4가지 기준(공적 영역 내 삭제요청자의 역할, 정보의 방식, 정보의 출처, 시간적 고려)들을 제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제한 프라이버시권의 우선 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삭제요청자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작을수록 삭제요청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제3자 집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 대기업 CEO,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타 유명 인사들과 같은 공인 또는 유명인의 경우, 제3자 집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사항에 대한 삭제요구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특정 환경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신중히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가령 TV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나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삭제요청자가 일반인이라면 관련 내용의 삭제가 대부분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대중의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라면 이들과 관련된 삭제요청은 일반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삭제요청과 관련된 기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일반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사적 혹은 성적 생활, 재정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링크 삭제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기사의 링크도 일반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검색 목록에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정보의 노출로 인해 개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도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논의를 포함하거나 학문적 혹은 예술적 목적에 관련된 것이라면 삭제해서는 안 되며, 공공보건이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의 출처와 시간적 경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공적관심사를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을수록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커진다. 또 정보의 출처가 어떤 매체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게시된 글이라도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Spiegel) 온라인판에 게재된 기사는 그대로 두지만, 페이스북(facebook)에 게재된 링크는 삭제되는 식이다.

자문위원회는 위에서 거론한 법적 고려기준 외에 추가로 몇 가지 절차상의 방식을 권고하였다. 먼저 삭제요청 양식은 손쉽게 인터넷에서 다운 혹은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게시글 링크의 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모두에게 공지해야 하고, 이들이 구글을 통해 해당 삭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것은 삭제 요청자의 국가 도메인에서만 이루어지며,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독일 내 삭제요청은 오직 google.de의 검색목록에서만 제거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링크 삭제를 EU 역내 도메인으로 제한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주요 언론들의 논

조가 엇갈렸다.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의 언론 대다수는 삭제 요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쥐드도이체짜이퉁은 구글이 프랑스 정보보호기구의 요청을 무시하고, 링크 삭제와 관련된 조치를 여전히 세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지금과 같은 IT환경에서는 google.de(특정국가의 도메인)에서 링크가 삭제되었더라도, google.com(글로벌 도메인)에서 네티즌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링크 삭제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뉴욕타임스는 삭제 요청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강화라며 비판하였다.

## 마무리하며

독일 사회는 전반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결정에 대해 대체로 지지 혹은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륙법적 문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 유럽의 인터넷 시장을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당국자나 엘리트 언론인들과 달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곤잘레스 판결이 가지는 함의와 이에 따른 실질적 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사실은 독일 사회가 프라이버시권과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독일 사회의 반응과 대처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